

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신청서				처리기간
				30 일
신청인	①기 관 명			
	②성명(대표자)		③주민등록번호	
	④소 재 지	(전화 :)		
⑤보유생물자원목록				
순 번	보 통 명	학 명	개 체 수	비 고
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환경부장관 귀하				
구비서류				수수료
1. 시설요건				없 음
가. 표본보전시설 :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장(收藏)시설				
나. 살아있는 생물자원 보전시설 : 해당 야생동·식물의 서식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				
2. 인력요건 :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				
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생물분류기사				
나.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의 소지자로서 동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				
다.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의 소지자로서 동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				

※ 작성요령

- 1. ④소재지란에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이 있는 곳을 기재합니다.
- 2. ⑤보유생물자원 목록란에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.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